

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

구성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4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2. 2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개정이유

- 실태민의 애환을 달래고 입주영농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파리정착마을 조성사업은 민통선북방 옛장단지역이 1950년 6·25전쟁으로 인한 피란과 격전지로서 1952년 11월 20일 소개된 이후 50년만에 다시 고향땅에 거주할 수 있게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성격에 맞게
- “정착마을”을 “수복마을”로 명칭을 변경하고
- “수복마을 조성사업” 업무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조정됨에 따라 동파리 입주영농추진위원회 간사를 도시과장으로 변경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명중 “정착마을”을 “수복마을”로 변경(제명)
- 나. 조례 본문중 “정착마을”및“정착촌”을 “수복마을”로 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10조, 부칙 2항)
- 다. 동파리입주영농추진위원회 간사를 건설과장에서도시과장으로 변경(안 제8조)

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·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·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중 “정착마을”을 “수복마을”로 한다.

제1조·제2조 1호 내지 5호·제4조·제5조 제3항 2호·동조 제4항 3호 및 4호·제10조 제1항 및 제2항중 “정착마을”을 각각 “수복마을”로 한다.

제6조 및 부칙 제2항중 “정착촌”을 각각 “수복마을”로 한다.

제8조중 “건설과장”을 “도시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도시과 ☎ 940-4142	
입안자	도시과장	우범찬
	지역개발담당	박승순
	담당자	이만재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파주시동파리<u>정착마을</u>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조성되는 동파리 <u>정착마을</u>(이하 “<u>정착마을</u>”이라 한다)조성과 입주영농대상자 선발 및 운영·관리를 위한 파주시동파리<u>정착마을</u>입주영농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(위원회의 기능) (생략) 1. <u>정착마을</u> 조성에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. <u>정착마을</u> 입주자 선발에 관한 사항 3. <u>정착마을</u> 택지분양 방법 및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. <u>정착마을</u> 운영규정 및 입주자 관리규정 5. 기타 <u>정착마을</u>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(실무위원회 설치)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<u>정착마을</u>조정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제5조(실무위원회 구성등) ①~② (생략) ③ (생략) 1. (생략) 2. 육군 제1사단 관계관, 관할 기무부대 관계관등 <u>정착마을</u> 조성에 관련있는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④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<u>정착마을</u>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실무적인 협의사항 4. 기타 <u>정착마을</u> 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	파주시동파리<u>수복마을</u>입주영농추진위원회 구성·운영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조성되는 동파리 <u>수복마을</u>(이하 “<u>수복마을</u>”이라 한다)조성과 입주영농대상자 선발 및 운영·관리를 위한 파주시동파리<u>수복마을</u>입주영농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 1. <u>수복마을</u> 조성에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. <u>수복마을</u> 입주자 선발에 관한 사항 3. <u>수복마을</u> 택지분양 방법 및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. <u>수복마을</u> 운영규정 및 입주자 관리규정 5. 기타 <u>수복마을</u>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(실무위원회 설치)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<u>수복마을</u>조정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제5조(실무위원회 구성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육군 제1사단 관계관, 관할 기무부대 관계관등 <u>수복마을</u> 조성에 관련있는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④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수복마을</u> 조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실무적인 협의사항 4. 기타 <u>수복마을</u> 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<u>정착촌</u>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. 다만 (생략) 제8조(간사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두되, 위원회의 간사는 <u>건설과장</u>으로 하고,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지역 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. 제10조(입주자 선발) ①위원회에서는 <u>정착마을</u> 입주 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공개로 선발하되, 사전에 입주자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요강을 공고하여야 한다, ②제1항의 입주자를 선발함에 있어 민통선 <u>정착 마을</u>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춘 자가 입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1.~4. (생략) 부칙 ① (생략) 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<u>정착촌</u> 입주가 완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가진다.	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<u>수복마을</u>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. 다만 (현행과 같음) 제8조(간사)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두되, 위원회의 간사는 <u>도시과장</u>으로 하고,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지역 개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. 제10조(입주자 선발) ①위원회에서는 <u>수복마을</u> 입주 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공개로 선발하되, 사전에 입주자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요강을 공고하여야 한다, ②제1항의 입주자를 선발함에 있어 민통선 <u>수복 마을</u>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음 각호의 요건 을 갖춘 자가 입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1.~4. (현행과 같음) 부칙 ① (현행과 같음) ②(유효기간) 이 조례는 <u>수복마을</u> 입주가 완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가진다.